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2,490,675	8,174,720
일반회계	261,813,461	7,854,404
특별회계	10,677,214	320,316
기타특별회계	10,677,214	320,31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70,374	50,111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2,079	662
의료급여특별회계	898,599	26,958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296,000	8,880
주택사업특별회계	464,271	13,928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96,000	2,880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2,420,747	72,622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563,000	16,890
장흥담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683,203	80,496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1,562,941	46,88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63,15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